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관리침해정보 처리절차 개편 및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15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절차 개편(안 제44조 등)	3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4조의10 등)	17
3. 디지털윤리교육의 실시(안 제44조의17)	37
4.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18)	4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버불링, 사이버λεκ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8%,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운동선수·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임시조치, 심의를 통한 차단,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

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건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며, 삭제·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등).
- 나.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함(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6까지).
-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교육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시책을 수립, 전국 초·중·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함(안 제44조의17 신설).
- 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관련하여 법률에 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확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의18 신설).

Ⅲ. 검토의견

1.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절차 개편(안 제44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권리침해정보의 범위에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
(안 제44조 제1항 등).
- 권리침해당사자(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권리침해정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편함(안 제44조의2).

구분	현 행	개 정 안
신청인의 요청 내용	-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삭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	- 30일 이내 -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회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 -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임시조치	- 임시조치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 후 삭제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에 임시조치 관련 자료 송부(직권조정절차)
임시조치 기간	- 30일	- 30일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사항	(신청인의 삭제 요청 시) : 신청인·정보게재자 대상 -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	(신청인의 삭제 요청 시) : 신청인·정보게재자 대상 -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구분	현행	개정안
		및 절차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 신청인 대상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절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제	-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이로 인한 배상책임의 감면 • 면제 가능(임의)	- 필요한 조치 및 신청인 • 정보 게재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 - 정보의 유통 • 접근 차단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제(강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조항 미적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편함(안 제44조의3).

구분	현행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 임의의 임시조치	-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 후 삭제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에 임시조치 관련 자료 송부(직권조정절차)

구분	현행	개정안
임시조치 기간	- 30일	- 30일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사항	-	-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	- 30일 이내 -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회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u>침해</u> 또는 <u>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침해</u> , <u>명예훼손</u> , 모욕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u>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 <u>명예훼손</u> , 모욕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2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유통 또는 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에 회부된다는 사실</u> 3.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u>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 ----- -----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

현행	개정안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다. 검토사항

□ 권리침해정보에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의 예시에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권리침해정보에 모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모욕죄¹⁾는 명예훼손죄²⁾와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만 표현하여도 해당할 수 있어 더 많은 양의 정보가 포섭되게 됨. 모욕으로 판단되는 정보가 명예훼손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제,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8년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던 입법시도가 수사기관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1)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력 비판을 통제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포섭되지 않은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 모욕의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등의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권리침해정보로 볼 수 있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구성요건과 처벌의 정도에 있어 모욕은 명예훼손에 비해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는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필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표현이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모욕에 관한 정보를 명예훼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절차 개편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44조의2) 권리침해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³⁾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⁴⁾.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되는 정보가 권리 침해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⁵⁾.

○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게재자가 삭제·임시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임시조치 이후에 사업자가 임시조치된 정보에 대하여 복원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법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는 현재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정보를

3)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하고 있으며, 임의의 임시조치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주요 사업자 임시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네이버	292,071	203,838	296,058
다음	56,006	28,240	22,498
네이트	756	1,141	828
계	348,833	233,219	319,384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우선 임시조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적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60일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임시조치 관련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44조의2 제6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44조의2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신청인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 즉시 임시조치를 하고
통지하였다면 그 정보가 유통·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되,

단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정보를 인지한 때부터
신청인의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의
임시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그런데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임의의 임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로서는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게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후에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이 없음에도 권리침해
정보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과도하게 임의의 임시조치 등을 하는
경우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도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및 후속절차가

없이 원만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의제기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이의제기 시 직권 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등을 일일이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안 제44조의2 제6항 단서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규정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4조의10 등)

1)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가. 개정안 요지

-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함(안 제44조의10 등).

구분	현행	개정안
명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u>5명</u> 이하 - <u>1명 이상</u> 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방심위 위원 1인 포함 ⁶⁾	<u>40명</u> 이하 - <u>3분의2 이상</u> 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위원 자격	①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법률·행정·언론정보·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⁷⁾	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그 상당에 재직자·재직하였던 자 ② 판사·검사·변호사 재직자·재직하였던 자 ③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상당 공공기관 재직자·재직하였던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임명	(위원장) 방심위원장이 지명 ⁸⁾ (위원) 방심위원장이 방심위 동의를 얻어 위촉	(현행과 같음)
위원 임기	<u>1년</u> (연임 가능) ⁹⁾	<u>2년(1회)</u> 연임 가능
업무 내용	- <u>권리침해정보</u> 와 관련된 분	- <u>권리침해정보 및 임시조치</u>

구분	현행	개정안
	쟁의 조정	와 관련된 ① 이용자 간 ②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의 조정
의사·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출석 ¹⁰⁾ - (의결정족수) 출석 과반 찬성	(현행과 같음)
조정의 효력	<u>민법상 화해¹¹⁾</u>	<u>재판상 화해</u>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6)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② 조정부는 위원회 위원 1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조정부의 설치목적에 합치되는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9)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조정의 성립)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u> <u>정부</u>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u>명예훼손 분쟁조정</u> <u>정부</u>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4조의10(<u>명예훼손 분쟁조정</u> <u>정부</u>)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 <u>침해, 명예훼손, 모욕</u> ----- ----- ----- ----- -----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u>회</u>----- ----- ----- ----- ----- ----- ----- ----- ②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

현행	개정안
<u>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u>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1. 조정 대상: <u>이용자 간 분쟁,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u> 2.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 가. <u>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u> 나. <u>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u> 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u>
<u>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u>	<u>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u> 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u>

현행	개정안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3. <u>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u> 4. <u>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③ <u>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④ <u>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u>

현행	개정안
<u>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u> <u>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 <u>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4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u>

현행	개정안
	<u>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2. <u>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 3. <u>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u> 4. <u>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②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권리 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분쟁조정기관임.

- 개정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시조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분쟁조정사무가 추가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현행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절차가 현재 삭제된 조문인 제33조의2제2항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현행유지 필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44조의10 제1항 제1호는 조정의 대상을 ‘이용자 간’,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으로 하고,
제2호는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내용을 ① 권리침해정보 관련 분쟁(가목), ② 임시조치 관련 분쟁(나목),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호 가목의 분쟁에는 이용자 간 분쟁(권리침해 당사자-정보게재자)과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권리침해 당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분쟁이 포함될 수 있고, 나목의 분쟁에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정보게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분쟁이 포함되는바,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분쟁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결정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점, 조정 효력이 재판상 화해로 격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변호사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명예훼손 분쟁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

자가 선택한 방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의도는 단순히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청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분쟁조정까지 수행하겠다는 의도
로 보는 것은 과도하므로,
정보게재자 또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나 이
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분쟁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인지,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할 것인지 직
접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분쟁조정의 절차

가. 개정안 요지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음(안 제44조의 12 등).

구분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안 제44조의12)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안 제44조의16)
사건의 접수	- 조정을 원하는 자의 신청	-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조정 전 절차	- 다른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 (필요한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조정 전 합의의 권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자료 송부 -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 제공·자료제출요구·조정 전 합의 권고
조정안의 작성 /직권조정결정의 의결	(조정안의 작성)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차례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위원회 의결 필요) -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 통지	(직권조정결정의 의결) - 직권조정절차 개시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서면의결 가능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 (15일 내 거부 의사표시 없는 경우 조정 수락으로 간주) - 당사자 전원 수락 시 조정 성립	-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송 미제기 시 결정 수락한 것으로 봄 - 당사자가 소송 제기 시 직권 조정결정 효력 상실
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
조정이 거부·정지되는 경우	(위원회의 조정 거부) - 이중으로 조정신청(또는 이미 조정한 사건을 재신청)한 경우	-

구분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안 제44조의12)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안 제44조의16)
	- 신청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조정의 정지)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조정 대상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절차) ①</u> <u>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u> <u>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u> <u>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u> <u>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u> <u>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 이해관</u> <u>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u> <u>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u> <u>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u> <u>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u> <u>야 한다.</u> <u>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u>

현행	개정안
<신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 후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

현행	개정안
	<u>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u> <u>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u> <u>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u> <u>제44조의14(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u> <u>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u> <u>제44조의15(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u>
<u><신 설></u>	

현행	개정안
<신설>	1.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6(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현행	개정안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 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44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위 직권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①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한 경우(신청에 따른 분쟁조정)와 ② 정보게재자가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직권조정)로 구분됨.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직권조정의 대상에 제44조의2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뿐만 아니라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당사자가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조정결정서가 임시조치된 정보의 삭제를 명할 경우 당사자의 결정 수락이 의제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해당 정보의 복원 또는 영구삭제 등의 조치나,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디지털윤리교육의 실시(안 제44조의17)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4조의17 제1항).
- 각급 학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 및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17(디지털윤리교육) ① <u>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디지털윤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u>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u>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 공표, 필요한 조치, 교육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²⁾,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윤리교육에 대한 시책도 해당 조문에 따라 수립할 수 있어 시책 수립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디지털윤리교육의 실시

- 개정안은 각급 학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의무 대상에 어떠한 기관이나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교육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 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디지털윤리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별도 법률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 활동 편성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¹³⁾, 개정안의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디지털 윤리교육 관련 주요 내용>

◆ [총론]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미래사회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도성 함양

◆ [교과 주요 내용(예시)]

- 도덕: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과학기술 시대 윤리적 쟁점과 책임
- 사회: △일상생활 인권 침해 사례 조사,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탐구
- 실과(기술·가정): △건강한 사이버 공간 활용,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파악
- 정보: △ 디지털 윤리, △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 [교과 성취 기준(예시)]

- [4도03-02]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탐구하여 정보 통신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른다.
- [9기가02-14] 디지털 생활환경으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혁신과 변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한다.

(출처: 국가교육위원회)

13) 유사한 취지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법정 의무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 첫째, 개정안 제44조의17 제3항의 문언만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누구의 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지원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윤리교육의 활성화는 제8호의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¹⁴⁾, 개정안에 기금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14)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전문기관의 지정

- 현재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등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¹⁵⁾,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디지털윤리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은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출연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2022~2024년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계획액(백만원)		
			2022	2023	2024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사이버 폭력·디지털윤리 관련 인식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동향 조사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방향 수립 지원	출연 (NIA)	350	350	350
	- (디지털윤리 교육) 올바른 디지털 이용의식 제고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사이버폭력 유해성 인지 및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4,974	5,224	5,224

15)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계획액(백만원)		
			2022	2023	2024
	-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 공모전,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전개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993	941	889
계			6,317	6,515	6,46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체계적인 디지털 윤리교육이 부재하므로, 디지털 윤리의식이 형성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임.

4.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18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44조의18 제1항).
-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제2항).
 -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제1호)
 -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제2호)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제3호)
 -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홍보(제4호)
 -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제5호)
 - 온라인 피해상담·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제6호)
 -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7호)
 -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호)
- 센터는 관계기관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18(온라인피해지원센터)</u> <u>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이하 “온라인 피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u> <u>2.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u> <u>3.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u> <u>4.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홍보</u> <u>5.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실태조사 및 국제협력</u> <u>6. 온라인 피해상담·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u> <u>7.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u> <u>8.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u>

현행	개정안
	<u>필요한 사항</u> ③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온라인 피해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피해지원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직접적인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예산액(백만원)		
			2022	2023	2024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은 피해 에 대해 전문상담을 통해 구체적 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 관을 안내(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 협회)	1,318	1,078	1,148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피해”란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말하는데,
피해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개인정보 침해, 전자거래·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¹⁶⁾,
개정안에 따른 센터의 업무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예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상 피해에 대하여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16) 가령 전자거래나 온라인광고로 발생한 피해의 구체·상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전자문서·전자
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내에 자체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운
영하고 있음

기능 확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30